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제정	1996.	3.	1	규	칙	제 7호
개정	1998.	10.	17	규	칙	제152호
	2005.	10.	5	규	칙	제424호(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2006.	1.	11	의회	규칙	제 3호
	2006.	10.	13	규	칙	제515호(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007.	7.	1	규	칙	제544호
	2010.	8.	2	규	칙	제609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12.	2	규	칙	제71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	6.	4	의회	규칙	제 21호
일부개정	2019.	12.	23	의회	규칙	제 27호
일부개정	2022.	1.	6	의회	규칙	제 38호
일부개정	2023.	1.	6	의회	규칙	제 43호
일부개정	2023.	4.	12	의회	규칙	제 44호
일부개정	2024.	2.	6	의회	규칙	제 50호
일부개정	2025.	2.	14	의회	규칙	제 53호
전부개정	2025.	7.	18	의회	규칙	제 5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5.	11.	14	의회	규칙	제 5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기구와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장 밑에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 청사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4. 의원 등록관리 및 복리후생, 의전 등 의원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사무직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7. 홍보계획 수립,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홍보 간행물 발간 등

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및 의회 통합 방송실 운영, 회의 생방송 송출에 관한 사항
9.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연수 및 공무원의 출장 등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1. 14〉

1. 의회운영 기본 일정 수립 및 의사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임시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배부·이송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장기·현안 과제의 조사·분석 등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 정비, 의원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의 법률 검토, 조례 사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회의록 및 의결문서의 작성, 발간,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의사진행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의사운영 및 입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두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전산주사·지방공업주사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1. 14>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5. 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서류 확인 및 답변서 작성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지원
7.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7조(정책지원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8조(세부 사무분장) 의회사무국의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부칙 <2025. 7. 18 의회규칙 제5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의정담당관”을 “소관 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중 “확인자 : 의정담당관 성명 ○○○ (인)”을 각 각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인)”으로 한다.

부칙 <2025. 11. 14 의회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서별	팀 별	담 당 사 무
의정담당관	의정팀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직원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의정회 및 각종 협의회 관리 7. 의원등록사항 정리·관리 8.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9.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인사운영팀	1. 지방공무원 임면 2.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사위원회 운영 3. 근무성적평정 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5. 지방공무원 채용 6.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 7. 공무원의 호봉승급 및 연봉책정 8. 퇴직준비교육 파견대상자 결정 및 임면 9. 명예퇴직 및 특별승진 제도 운영 10.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결정 11.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12. 대우공무원 선발 및 임용 13. 인사기록 관련 서류 보존관리 14. 지방공무원 상훈 및 포상제도 운영
	홍 보 팀	1. 의회 홍보계획 수립 2. 언론보도자료 작성 3. 언론매체 보도의 모니터링 및 대응 4. 각종 매체 인터뷰 및 시나리오 작성 5. 출입기자 등록 및 관리 6. 의회 홍보 관련 사진 촬영 및 DB 관리 7. 의정 홍보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 8. 각종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9. 의회수첩 제작 10. 그 밖에 의회홍보에 관한 사항
	방송미디어팀	1. 의회 방송홍보 계획 수립 2. 방송 매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방송 매체 인터뷰 등에 관한 지원 4. 홈페이지 운영 관리 5. 영상 중계 시스템 운영 관리 6. 의회 통합 방송실 운영 관리 7.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생방송 송출 8. 의회 홍보 관련 영상 제작 및 DB 관리 9. SNS 홍보물 기획 및 채널 관리 10. 그 밖에 의회 방송 및 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개발팀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2. 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

의사업법담당관	의 사 팀	3. 의정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 1.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6.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 수립 및 심의 10. 토론회 등 운영계획 수립 및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입법지원팀	1. 의회입법정책 등에 관한 장기·현안과제의 조사와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정에 관한 민원, 학술연구, 용역, 조사, 자문에 관한 사항 3.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대한 검토 및 조례사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집행부 발의 안건 등에 대한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조례안의 법률적 검토에 관한 사항 6. 법제지원에 관한 사항 7. 의회관련 쟁송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의정기록팀	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정책지원팀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